

우리나라所得稅制의 稅負擔 分析 — 都市 및 農村家計의 合算資料를 사용한 實證結果 —

玄鎮權 · 羅城麟

〈목 차〉

- I. 序論
- II. 資料의 說明
- III. 結果分析
- IV. 要約 및 結論

I. 序 論

세부담 분석에 관한 연구는 재정학자들에게 오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주로 실증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세부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국의 경우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¹⁾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이유는 자료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세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 및 지출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미시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인 곳이 통계청과 농림수산부이다. 세부담 분석을 위한 가장 많이 쓰이는 미시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자료와 농림수산부의 농촌경제통계자료이나, 이 자료들의 사용도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자료는 비교적 개인의 지출구조를 매우 상세히 조사하였으므로 간접세 부담분석에 몇 차례 사용되었다.(곽태원, 1987; 이계식과 배준호, 1986).

1) 미국의 세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대표적인 연구로는 Pechman(1985)와 Pechman and Okner(1974)를 들 수 있다.

소득세의 세부담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간접세에 비해 더욱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자료나 농림수산부의 농촌가계자료가 비교적 지출조사는 상세하게 되어 있으나, 소득세에 관한 독립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관련한 대표적인 실증적 연구로는 한승수(1982)와 심상달과 박인원(1989)을 들 수 있다. 한승수(1982)는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통계를 통하여 발표된 1976년, 1978년, 1980년 거시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세부담을 분석하였다. 심상달과 박인원(1989)은 1984년과 1986년 도시가계연보의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의 세부담을 분석하였다. 도시가계연보의 미시자료는 소득세에 관한 독립적인 항목은 없고, 소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을 포함한 세액에 관한 정보만 있으므로 소득세 부담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가계자료만을 사용한 분석은 우리나라 전체가계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모집단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모집단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자료와 농림수산부의 농촌가계자료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도시가계자료와 농촌가계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소득분포를 분석한 연구는 주학중(1979, 1982)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자료를 합산하여 이용한 기준의 연구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세부담의 형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미시자료로서 1991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와 농림수산부의 농촌가계조사자료이다. 또한 이 두 가지 자료들은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합산되어 사용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소득세에 관한 독립항목이 없으므로 각 가구의 인구 및 소득의 특성에 따라 소득세액을 환산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가 기여한 부분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비교적 최근인 1991년 미시자료를 사용한데 있다. 또한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자료를 합산하여 전체가계로 모집단을 확장하여 최초로 소득세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자들의 기존 연구의 연장선 상에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산자료를 통한 기존의 연구로는 현진권과 나성린(1993a), 이만우와 나성

린과 현진권(1993)을 들 수 있다. 현진권과 나성린(1993a)은 우리나라 간접 세에 관한 세부담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만우와 나성린과 현진권(1993a)은 사회부조정책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형평성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형평성을 분석한 현진권과 나성린(1994)은 198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현진권과 나성린(1993b)은 1991년 도시가계 자료를 사용하여 모든 세제와 사회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촌가계의 합산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제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형평성을 측정하는 여러가지 모형이 있지만 저자들이 현진권과 나성린(1994)를 통하여 사용한 Gini계수, Atkinson지수, Berlant-Strauss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²⁾

본 연구에 보여준 실증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누진 도가 높은 반면, 수평적 형평성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계의 소득세 부담이 농촌가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소득세 부과대상이나 농촌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 및 농촌가계자료와 처리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II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IV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보여주고, 정책 시사성과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II. 資料의 說明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1년도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도시가구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1년 도시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농촌가구에 대한 자료는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한 1991년 농촌경제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도시가계조사의 목적이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정보의 파악에 있는 반면, 농촌가계 조사의 목적은 농

2) 세 가지 형평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발표된 현진권과 나성린(1994)을 참고하기 바란다.

촌가구의 경제상태 및 경영실태의 파악에 있다. 각 자료는 서로 다른 목적에서 조사되었으므로 각 항목을 서로 비교하고 합산(merge)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의 적용대상이 우리나라 전체가구이나,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는 도시가구 조사는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1인 도시가구는 제외되며, 또한 도시에서 농사짓는 계층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가구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농촌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사용한 도시가구와 농촌가구들이 우리나라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 2-1>과 같다. 도시가구 자료는 해당되는 모집단이 8,169,874가구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68.2%를 차지한다. 또한 농촌가구 자료는 해당되는 모집단이 1,702,302가구로 전체 가구의 14.2%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두 자료의 사용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2.4%를 대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는 <표 2-1>에서 보여주는 모집단을 사용하여 모집단화를 시도하였다.⁴⁾

<표 2-1> 都市 및 農村家口의 家口數

전체 가구수	도시가구(A)		농촌가구(B)		A+B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1,986,988	8,169,874	68.2%	1,702,302	14.2%	9,872,176	82.4%

1. 所得 推定值의 比較

<표 2-2>는 도시가계의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총액을 국민계정과 비교한 것이다. 도시가계의 소득 종류별 총액은 우리나라 전체 모집단 가구의 6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계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도시가계의 국민계정 대비

3) 모집단화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은 나성린과 혼진권(1993)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1987년 도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91년 자료와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자료에 적용하여 모집단화를 시도하였다.

는 66%를 보여주고, 기타 소득은 국민계정의 6.7%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원천과세전 소득)의 총액을 국민계정에서 나타난 피용자 보수와 비교하면 74.3%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4.2%를 차지하는 농촌가구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가 차지하는 근로소득 비율인 66%는 실제보다 다소 적은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조사는 사업소득에 비해 훨씬 정확도가 높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항목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사업 및 부업 소득 총액의 국민계정에 대한 비율은 66.9%를 보여준다. 도시가계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68.2%를 감안할 때, 비교적 정확한 수치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뚜렷히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자료의 사업소득에 대한 항목이 비교적 정확히 측정되었다고 가정하고 모집단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재산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자 및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다.

〈표 2-2〉 都市家計 所得의 國民計定과의 比較

(단위 : 십억원)

도 시 가 계 (A)	국 민 계 정 (B)	비율(A/B)		
근로 및 기타 소득	73,288.0	피용자 보수	98,697.8	74.3%
○ 근로소득	65,126.7			66.0%
○ 기타소득	8,161.3			8.3%
사업 및 부업소득	29,067.6	영업잉여	43,438.2	66.9%
재산소득	3,516.0	재산소득	15,013.7	23.4%
○ 이자 및 배당	1,087.3	○ 이자 및 배당	14,202.7	7.7%
○ 임료	2,428.7	○ 임료	811.0	299.5%

도시가계 자료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이 합산한 수치만이 있으므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산치를 국민계정과 비교한다. 도시가구의 이자 및 배당 소득 합산액은 국민계정 7.7%로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투자소득은 과소보고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경향을 본 자료에서는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의 투자소득에 대한 모집단화없이 단순한 자료의 사용은 투자소득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임대수익의 경우, 도시가계의 총액이 국민계정의 299.55를 차지하는 이상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도시가계의

경우 임대비용을 포함한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반면, 국민계정에서는 임대비용을 제외한 순임대수익을 말한다. 이러한 회계상의 차이점으로 인해 두 결과치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표 2-3〉은 농촌가계의 농업수익, 겸업수익, 재산수익을 국민계정의 통계치와 비교한 결과이다. 농촌가계의 농업수익과 겸업수익을 국민계정과 비교하면 각각 27.8%, 2.9%로, 이 두 가지 수익이 국민계정 영업잉여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가계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25임을 고려할 때, 이들 수익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가계의 사업 및 부업소득과 농촌가계의 농업 및 경업수익의 합산액이 국민계정의 영업잉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구인 도시의 단독가구, 도시의 농가가구, 농촌의 근로자 가구가 비교적 영업소득이 매우 적은 재산수익을 살펴보면, 이자소득은 국민계정의 1.3%를 차지하고, 배당소득은 국민계정의 1.9%를 차지한다. 농촌가구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4.2%를 차지함을 감안할 때,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임대소득의 경우, 국민계정의 57.8%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투자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재산소득의 국민계정의 비율은 4.4%를 보여준다.

〈표 2-3〉 農村家計 所得의 國民計定과의 比較

(단위 : 십억원)

농 촌 가 계 (A)	국 민 계 정 (B)	비율(A/B)		
농업수익	12,085.0	영업잉여	43,438.2	27.8%
겸업수익	1,242.9	영업잉여	43,438.2	2.9%
재산수익	664.5	재산소득	15,013.7	4.4%
○ 이자 및 배당	244.1	○ 이자 및 배당	14,202.7	1.7%
- 이자	218.4	- 이자	13,104.0	1.7%
- 배당	25.7	- 배당	1,098.7	2.3%
○ 임료	469.2	○ 임료	811.0	57.8%

〈표 2-4〉는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종류별 소득의 합을 국민계정과 비교한 결과이다. 도시가계를 나타내는 〈표 2-2〉와 농촌가계를 나타내는 표 2-3〉은 상세한 종류별 소득규모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표본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2.4%를 차지함을 고려하면서 국민계정의 총 소득과 비교한다. 근로 및 기타

소득은 전체 국민계정의 74.3%를 보여주고, 사업 및 농업소득(도시가계의 부업소득과 농촌가계의 겸업소득을 포함한 소득임)은 97.65를 보여준다. 이들 소득은 국민계정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추정치가 과소 혹은 과대한지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계층, 즉 도시지역 내의 농촌가계와 농촌지역의 균로자 가계의 구체적인 소득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내리기가 힘들다. 반면 재산소득은 국민계정의 27.85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정치가 국민계정에 비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투자소득은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산소득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모든 소득을 합한 총 소득의 국민계정과의 비율은 76.3%를 보여준다. 전체가구의 82.4%를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총 소득의 추정치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 全體所得의 國民計定과의 比較

(단위 : 십억원)

도시 및 농촌가계(A)	국민계정(B)	비율(A/B)		
근로 및 기타소득	73,288.0	피용자 보수	98,697.8	74.3%
사업 및 농업소득	42,395.5	영업잉여	43,438.2	97.6%
재산소득	4,180.5	재산소득	15,013.7	27.8%
합 계	119,864.0	합 계	157,149.7	76.3%

2. 投資所得의 母集團化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득을 국민계정과 비교한 결과, 다른 소득에 비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실제보다 과소보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농촌가구의 과소보고된 투자소득을 실제치에 근접시키는 모집단화를 시도한다. 도시와 농촌가계의 과세전 이자 및 배당소득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연간 과세전 평균이자 및 배당소득을 살펴보면, 도시가계가 133,087원이고, 농촌가계가 143,380원을 보여줘, 농촌가계가 더 높은 투자소득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도시가계는 계층별로 투자소득의 크기에서 높은 편차를 보이는 반면, 농촌가계는 계층 간의 투자소득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작음을 표준편차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가계의 투자소득의 합계가 국민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1%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2.4%를 차지함을 고려할 때, 투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음을 알 수 있다. 국민계정에 의해 도시 및 농촌가계의 투자소득을 모집단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다. 즉 본 자료는 전체가구의 82.4%만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7.6%의 가구(도시의 단독가구, 도시의 농가가구, 농촌의 균로가구)의 투자소득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도시 및 농촌가구 전체가 국민계정에서 나타난 투자소득의 얼마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단순히 전체 가구수의 도시 및 농촌가구 수의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국민계정에서 보여주는 투자소득의 82.4%를 본 자료의 도시 및 농촌가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국민계정에 보여주는 투자소득의 82.4%인 11,930.3십억원에 대해 도시 및 농촌가계의 투자소득의 합인 1,331.4십억원을 대비한다. 가구의 특성별로 투자소득에 대한 보고의 정도가 서로 다를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미비점으로 인해 도시 및 농촌가구 모두 똑 같은 비율로 과소 보고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국민계정 투자소득의 82.4%인 11,930.3십억 원에서 도시 및 농촌가구의 투자소득의 합인 1,331.4십억원을 나눈 값인 8.96을 투자소득의 모집단화 가중치로서 사용한다. 모든 가구의 투자소득에 8.96을 곱하여 각 가구의 실제 투자소득으로 간주한다.

〈표 2-5〉 都市와 農村의 利子 및 配當所得의 比較

	도 시	농 촌
평균(원)	133,087	143,380
표준편차(1,000)	26,757	15,655
총액(십억원)	1087.3	244.1
국민계정 대비(%)	7.7%	1.4%

3. 稅收 推定值의 比較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가 가지고 있는 소득종류별 각 소득과 항목별 지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각 가구가 지불하는 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각 가구가 납부하는 세액의 계산에서 과세단위는 가구로 가정한다. 현실에서는 과세단

위가 자산소득의 경우는 가구단위로 합산이 되지만, 그외 소득은 개인별 단위로 과세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가구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과세단위로 가구를 사용한다. 도시가계자료에서는 조세에 관한 항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가계의 조세에 관한 항목은 조세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전체 세액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액에 관한 항목은 소득에 관한 항목처럼 비교적 조사를 통해 신빙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의 소득종류별 소득액과 가구 특성(예를 들면, 가구원 수, 가구원 연령, 어린이 수 등)을 사용하여 소득세액을 구하였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기타 소득세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때 과세단위는 가구이며 도시가계자료가 가지는 가구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세액을 구하였으나, 어떤 항목은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필요한 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부분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인적공제에서 장애자 공제를 고려할 수 없었고, 세액공제에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화재손실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는 고려할 수 없었다. 세액공제에서 이들 고려할 수 없었던 세액공제의 총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경우 총 세액공제액인 166,991백만원 중에서 88,200백만원을 차지하여 52.8%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만큼의 소득세수의 차이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득세액은 기본적으로 모든 가구가 정직하게 납부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의 조세회피가 일반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계산된 소득세액을 각 가구가 정확히 납부하며, 조세회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득세액은 실지 징수한 소득세액과는 거리를 가지게 된다.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소득 관련세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액과 농지세를 들 수 있다. 지방세인 농지세의 경우 그 해당 항목에 대한 농지세액의 계산이 매우 다양한 경우이므로, 본 연구의 농촌가계 자료를 사

용하여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 관심의 대상은 세수이므로 농지세인 지방세는 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농지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지세의 세수규모가 매우 적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다. 1991년에 전체 농지세의 세수규모는 5,832백만원으로 전체 농가가계(약 1.7백만 가구)에 대한 평균 농지세액은 평균 3,400 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한 전체 세수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지세를 고려하지 않는다.⁴⁾ 그러므로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액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가계의 국민계정에 따라 모집단화된 투자소득을 사용하여 원천과세액을 구하고, 이를 농촌가계의 소득세로 사용한다.

가. 所得稅 推定值의 比較

〈표 2-6〉는 도시가계의 종류별 소득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원천별 소득세액을 구하여 국세통계에서 나타나 소득원천별 소득세액과 비교한 결과이다.⁵⁾ 여기서 이자 및 배당소득세액과 기타 소득세액은 원천징수액을 나타낸다. 도시가계에서 지불한 이자 및 배당의 총 원천징수액은 0.97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가구들의 조사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 국민계정과의 대조를 통한 모집단화에 의해 구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총액이다. 이 결과는 전체 1991년 총 이자 및 배당 원천징수액의 52.2%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기타 소득의 경우, 총 원천징수세액은 0.343조원으로, 국세통계의 0.076조원에 비교할 때 450% 큰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기타 소득의 많은 부분이 조세회피되는 현실을 감안할때, 본 연구의 추정치는 각 가구는 산정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조세회피가 없는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도시가구의 총 근로소득세액은 2.9조를 보여주며, 국세통

4) 농지세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농지세에 관한 세액을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향후 시도될 것이다.

5)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신고분과 원천분 소득관련 세액에 대한 통계만 있고 근로자 및 사업자의 부문별 소득세액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부 세제실의 내부 통계자료를 병행하여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세액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원천분과 신고분의 소득세액을 합산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로 가정하였다.

계에서 나타난 총 균로소득세액은 1.8조를 보여주어, 도시가구의 총 균로세액이 국세총계의 160.9%를 보여주었다. 어느 균로세액을 계산할 때 자료의 제약점으로 인해 세법상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 가구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의 경우 도시가계의 납부한 총 사업소득이 3.5조원이며, 국세통계의 총 세액은 1.65조원을 보여주어, 도시가계의 총 사업소득이 국세통계보다 217.5%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의 과소보고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통한 세액의 탈루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소득이므로 국세통계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소득관련 세액을 비교하면, 도시가계가 납부한 총 소득세액은 7.86조원이며, 국세통계에서 나타난 총 소득세액은 5.43조원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가 납부한 총 소득세액이 국세통계의 144.8%를 보여주어, 도시가계의 납부액이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회피나 세정상의 조세 누락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정확히 납부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표 2-6〉 所得源泉別 所得稅額의 國稅統計와의 比較

(단위 : 백만원)

	도시(A)	국세통계(B)	A/B
이자 및 배당	974,226	1,866,123	52.2%
○ 이자		1,642,871	
○ 배당		223,252	
기타소득	343,638	76,402	450.0%
근로소득	2,956,882	1,837,567	160.9%
사업소득	3,590,198	1,650,800	217.5%
합 계	7,864,944	5,431,808	144.8%

농촌가계의 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액 만을 고려하며, 〈표 2-7〉는 전체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의 규모를 국세통계치와 비교한 결과이다. 1991년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액은 437,382백만원이며, 이는 국세통계에서 보여주는 1991년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전체 징수액의 23.4%를 차지한다. 도시가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전체 국세통계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농촌가계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합은 국세통계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및 농촌가계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자 및 배당의 원천과세액의 국세통계치와의 비율과는 조금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2-7〉 農村家計의 利子 및 配當에 대한 所得稅額과 國稅統計의 比較 (단위 : 백만원)

	농촌(A)	국세통계(B)	A/B
이자 및 배당	437,382	1,866,123	23.4%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전체 소득세액은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득세액을 합산하여 구한다. 위 표에서 보여주는 각 소득세액의 합을 국세통계치와 비교하면 〈표 2-8〉와 같다. 도시가계의 총 소득세액이 국세통계치의 144.8%를 보여주고, 농촌가계는 국세통계치의 8.1%를 보여준다. 도시 및 농촌가계 모두가 부담하는 총 소득세의 규모는 국세통계치의 152.9%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계산한 국세 중의 소득세 규모는 실제 징수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세수 규모액에 대한 정확한 추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의 변화에 따른 세수규모의 변화율에 대한 추정에 있으므로, 전체 세수규모가 실제액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991년 세수 규모를 본 연구의 추정치인 8,302,326백만원(도시가계의 세수인 7,864,944백만원과 농촌가계의 세수인 437,382백만원의 합계액)을 사용한다. 이 추정치를 기준으로 소득세제의 변화가 세수규모에 미치는 변화율을 계산하여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표 2-8〉 全體 所得稅額의 國稅統計와의 比較

(단위 : 백만원)

	도시(A)	농촌(B)	국세통계(C)	A/C	B/C	(A+B)/C
소득세액	7,864,944	437,382	5,431,808	144.8%	8.1%	152.9%

III. 結果分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의 세부담을 세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즉 도시가계, 농촌가계,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산한 자료가 그것이다.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은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농촌가계와의 합산을 통한 실증적 분석은 없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소득세 부담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고,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한 전체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을 보여준다.

도시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 및 사업소득인 반면, 농촌가계의 농촌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들 두 가계간의 소득세 부담의 차이점을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10분위별 소득세 부담률, 지니계수, Atkinson지수, B-S 지수를 사용한다.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를 사용한 형평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세전의 소득을 통한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와 비교한다. 이 지수들의 증감을 퍼센트로 환산하여 소득세의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변화를 살핀다.

1. 所得稅 負擔의 分析結果

〈표 3-1〉은 도시가계, 농촌가계 및 모든 가계의 소득세 부담을 형평성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10분위별로 나누어 각 계층의 소득세 부담율(%)을 비교하면, 도시가계의 경우 최저소득 계층인 1분위의 소득세 부담율은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계층 2분위의 소득세 부담율은 1.85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 부담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경우 11.75%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계의 세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의 누진적으로 높은 구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제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가계의 경우,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소득세 부담율은 1.04%이며, 2분위와 3분위의 세부담율은 0.31%, 0.4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최소 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세 부담율은 2분위에서 6분위 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분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율

을 보이는 이유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서는 20% 원천세가 적용되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가계의 세부담은 비교적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은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1분위, 6분위, 8분위 계층은 누진적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소득세 부담율이 낮은 형태를 보여준다.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부담율은 3.68%로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세 부담율을 보여준다.

〈표 3-1〉 所得稅 負擔率의 比較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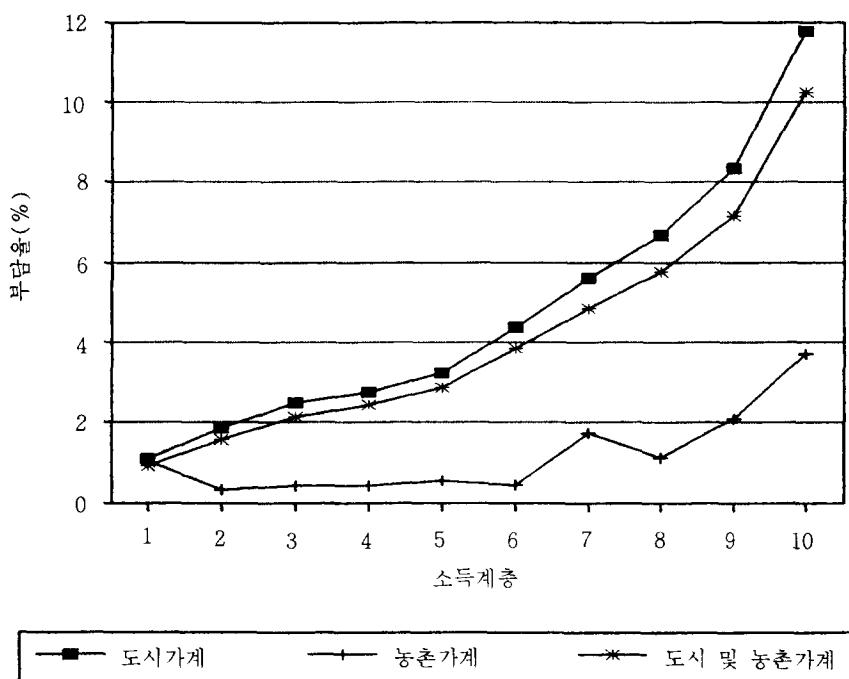
소득계층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가계
1 분위	1.10	1.04	0.91
2 분위	1.85	0.31	1.58
3 분위	2.49	0.41	2.14
4 분위	2.75	0.41	2.44
5 분위	3.24	0.53	2.86
6 분위	4.36	0.44	3.85
7 분위	5.60	1.72	4.87
8 분위	6.67	1.13	5.77
9 분위	8.32	2.07	7.14
10 분위	11.75	3.68	10.26
평균부담율	6.64	1.74	5.79
지니계수	0.2907	0.3241	0.2974
변화율	-6.3	-1.7	-5.2
Atkinson지수			
$\epsilon=0.5$	0.0725	0.0851	0.0749
변화율	-11.2	-3.3	-9.5
$\epsilon=0.9$	0.1269	0.1472	0.1307
변화율	-10.4	-3.0	-8.8
B-S 지수			
누진도	0.9158	0.7328	0.8509
비례도	0.0173	0.0810	0.0182
역진도	0.0669	0.1862	0.1308
수평적 평균도	0.1336	0.1523	0.0878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소득세 부담율을 비교하면, 도시가계의 부담율이 농촌가계에 비해 훨씬 높은 부담율을 보여준다. 도시 및 농촌가계의 평균 소득세 부담율을 비교하면 도시가계는 6.64%이고, 농촌가계는 1.74%로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의 3배 이상의 세부담율을 보여준다. 이는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만을 고려한 것

이고, 농가소득의 대부분은 소득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부담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가계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도시가계의 소득세 부담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율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의 부담율은 가장 낮은 부담율인 0.91%, 2분위 계층은 1.58%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득세 부담율이 누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소득세 부담율은 10.26%로 가장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율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는 누진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소득세의 평균 부담율은 5.79%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은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가계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10분위에 대한 소득세 부담율을 좀더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결과로, 위에서 설명한 비교를 쉽게 시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 3-1> 소득세 부담의 비교



소득세제는 소득재분배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를 사용하여 규명할 수 있다. 도시가계의 경우, 소득세후의 소득을 사용하여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측정하여 보면 지니계수는 0.2907이고, Atkinson지수는 ϵ 의 값에 따라 각각 0.0725와 0.1269를 보여준다. 이를 소득세전의 소득을 사용한 형평지수와 비교해 볼 때, 소득세가 형평성을 6.3%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Atkinson지수의 경우 ϵ 의 값에 따라 소득세제의 형평성 향상효과는 각각 11.2%와 10.4%를 보여준다.

농촌가계의 소득세후 소득의 형평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지니계수의 경우 0.3241, Atkinson지수의 경우는 각각 0.0851과 0.1472를 보여준다. 이는 소득세전의 소득에 대한 형평지수와의 비교를 통해 소득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지니계수를 이용하면 소득세제의 형평성 향상효과는 1.7%를 이고, Atkinson지수를 이용하면 각각 3.3%와 3%의 형평성 향상효과를 보여준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도시가계가 농촌가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가계의 소득세가 농촌가계의 소득세보다 훨씬 높아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시가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 0.2974이고, 5.2%의 형평성 향상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Atkinson지수의 경우는 각각 0.0749와 0.1307이고, 형평성 향상효과는 9.5%와 8.8%를 보여준다.

B-S지수를 사용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경우 소득세제의 누진도는 0.9158로 매우 높은 누진구조를 나타낸다. 반면 농촌가계의 경우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0.7328로써 도시가계에 비해 낮은 누진도를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보여주었던 10분위 소득계층을 사용한 소득세 부담율을 하나의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산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누진율이 0.8509로 나타났다. B-S지수를 사용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경우는 수평적 형평도가 0.1336이고, 농촌가계의 경우는 0.1523이다.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은 0.0878로 매우 낮은 편이다.

IV. 要約 및 結論

소득세의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재정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지만, 실제 소득세제의 정책입안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측정하는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득세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미비한 이유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미시자료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가계연보에 의존하여 소득세제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거시자료의 사용은 가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의 세부담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미시자료를 사용한 소득세의 부담분석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미시자료를 사용한 연구일지라도 도시가계자료만에 의존하여 실증적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도시가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가계만을 사용하여 얻은 실증적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일부분을 설명할 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0분위별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세 부담율을 사용하였고,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니계수 Atkinson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소득세제의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누진도와 수평적 형평도 지수를 나타내는 B-S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자료와 농림수산부의 농촌경제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자료들은 각각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소득세 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전체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도시가계와 농촌가계 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자들의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합산한 자료를 사용하므로써 각 자료가 가지는 모집단을 우리나라 전체가계를 대표하는 모집단으로 확대하여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득세 부담과 소득세제의 특징에 대한 실증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도시가계의 소득세 평균 부담율은 6.64%이며, 농촌가계는 1.74%로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소득세 구조의 누진도가 높다. 이는 도시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농촌가계의 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도시가계의 누진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율이 높게 나타나는 누진적 구조를 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평균 부담율은 5.79%이다.

(2) 도시가계의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크므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한 결과, 지니계수는 5.2%, Atkinson지수는 각각 9.5%, 8.8%의 소득 재분배의 향상효과를 보여준다.

(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가계는 누진도가 0.9158이고, 농촌가계의 누진도는 0.7328로 도시가계의 누진도가 농촌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의 누진도는 0.8509로서 우리나라 소득세의 누진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은 도시가계의 경우 0.1336, 농촌가계의 경우 0.1523을 보여줘,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은 0.0878로 낮게 나타났다.

1. 政策示唆性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조세개혁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방법론은 소득세제의 개혁시 응용하여 각 대안에 대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를 통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소득세제가 경제의 효율성, 소득분배 및 세수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최선의 세제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제개혁시 고려하여야 할 여러가지 사항 중에서 소득분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1991년 자료를 중심으로 매년 최신자

료로 보충하거나 시차를 조정하여 향후 소득세제 개혁의 중요한 데이터 베이스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조세 사회부조 모형”은 소득세제의 변화가 소득계층간의 소득분배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고안된 컴퓨터 팩키지이다. 이러한 모형은 선진 외국에서 사용하는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세제 분석모형과 같은 맥락이다. 소득세 개혁시 반드시 각 대안에 대한 효과를 미리 분석함으로써, 가장 설득력있는 소득세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형은 그 정확도에서나 적용범위에서 거시자료를 사용한 모형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용하다. 그러므로 미시자료를 사용한 소득세 모형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되어 소득세제의 과학적 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2. 研究의 限界 및 向後 研究方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도시자료 및 농촌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자료를 합산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82.4%만을 모집단으로 포함할 뿐이다. 본 자료에서 고려할 수 없는 도시 내 농촌가계와 농촌 내 근로자 가계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가계를 대표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계를 포함하는 자료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계층을 포함한 자료는 없으므로 향후 가능한 시기에 본 연구는 보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정보가 국민계정과 비교할 때 매우 과소보고된 결과를 보여, 투자소득을 전체적으로 모집단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과소보고하는 정도는 가계의 특성 및 소득정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는 향후 이루어질 것이다.

參考文獻

1. 곽태원,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제의 소득 재분재 효과」, 『한국개발연구』, 제9권 제3호 1987.

2. 나성린 · 현진권, 「한국의 조세－사회부조 모형 2 : 모집단화 적용을 통한 조세－사회부조의 소득분배 효과」, 『재정논집』, 제7집, 1993.
3. 심상달 · 박인원, 「재정과 소득재분배」, 『재정논집』, 제3집, 1989.
4. 이계식 · 배준호, 「우리나라의 간접세 부담분포 분석」, 곽태원 · 이계식(편), 『조세정책과 세제발전』, 한국개발연구원, 1986.
5. 이만우 · 나성린 · 현진권, 「현행 공적부조의 경제적 효과 및 개선방향 : 빈곤측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8집, 1993.
6. 현진권 · 나성린, 「우리나라 세제의 형평성 측정」, 『경제학 연구』, 제41집 제3호, 1994년.
7. 현진권 · 나성린, 「간접세 부담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발표논문, 1993년a.
8. 현진권 · 나성린,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제32집 제2호, 1993년b.
9.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상)』, 한국개발연구원, 1979.
10.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하)』, 한국개발연구원, 1982.
11. Berlant, M.C. and R.P. Strauss, "Measuring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Taxes", In Zeckhauser, R. and D. Leebaert(Eds.), What Role for Government?, Durham, ND : Duke University 1983.
12. Berlant, M.C. and R.P. Straus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in David & Smeeding(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13. Borooah, V., "Problems i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and Poverty : a Survey", *The Indian Economic Journal*, vol.38, No 4, 1991.
14. Lamebert, P.J., *Th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Basil Blackwell, 1989.
15. Pechman, Joseph, Who Paid the Taxes, 1966–85,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16. Pechman, Joseph and Benjamin Okner, Who Bears th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